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57 발의연월일: 2022. 10. 7.

발 의 자:이용빈·송갑석·민형배

신영대 • 민병덕 • 이형석

서영교 • 이용선 • 홍기원

한병도 • 이원욱 • 강득구

양정숙 • 강훈식 • 서영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,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, 5·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(이하 "각 단체"라 함)의 회장, 부회장, 이사 등 임 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, 총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각 단체의 임원 선출이 전체 회원의 직선이 아닌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간선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, 각 단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총회를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

총회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선출의 방식을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0조 등). 법률 제 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 ·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 중 "회장·부회장·사무총장·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"을 "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및 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,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"을 "총회의사록"으로 한다.

제6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총회) ① 총회는 <u>회장·부</u>	제60조(총회) ① <u>정관으로</u>
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	<u>정하는 임원 및 회원</u>
<u>장과 대의원</u> 으로 구성한다.	
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, 선	② 총회의사록
<u>임방법 및 총회의사록</u> 등에 관	
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	
제62조(지부장 등) ① (생 략)	제62조(지부장 등) ① (현행과 같
	<u> </u>
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	<u><</u> 삭 제>
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.	